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 반 의 안

(10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3-5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1
2023-57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경제기업과)	18
2023-58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	21
2023-59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29
2023-60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35
2023-61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41
2023-62	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48
2023-6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54
2023-64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민간위탁동의안 (건설교통과)	61
2023-65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복농촌과)	7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3-5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202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자투리땅과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위 치 : 거창읍 상림리 31-46번지 등 6필지
- 취득면적 : 토지 1,463㎡ / 주택 117㎡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정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463	1,537,739			
취득	주택	상림리 31-46	대	274	379,983	2023.7.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상림리 31-47	대	148	189,431			
취득	주택	중앙리327-9,329-1,329-11	대	392	326,230			
취득	토지	중앙리 328-10	대	139	198,395			
취득	토지	중앙리 324-14	답	275	239,250	미정		
취득	토지	중앙리 324-8	답	235	204,45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 / 토지(공시지가×면적×2), 건물(개별주택가격)

다. 추진경과

- 2023. 1. ~ 2. : 2023년 1차 단독주택(나대지) 매입 공고·접수
- 신청현황 : 24개소 38필지
- 2023. 4. : 매입부지 선정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 5. ~ 6.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감정평가
- 2023. 6. ~ 7. : 보상협의를
- 2023. 8. :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 2023. 9. ~ 10.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로 주차난 해소 및 양방향 불법 주차 감소로 차량 교행 원활
-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대비 조성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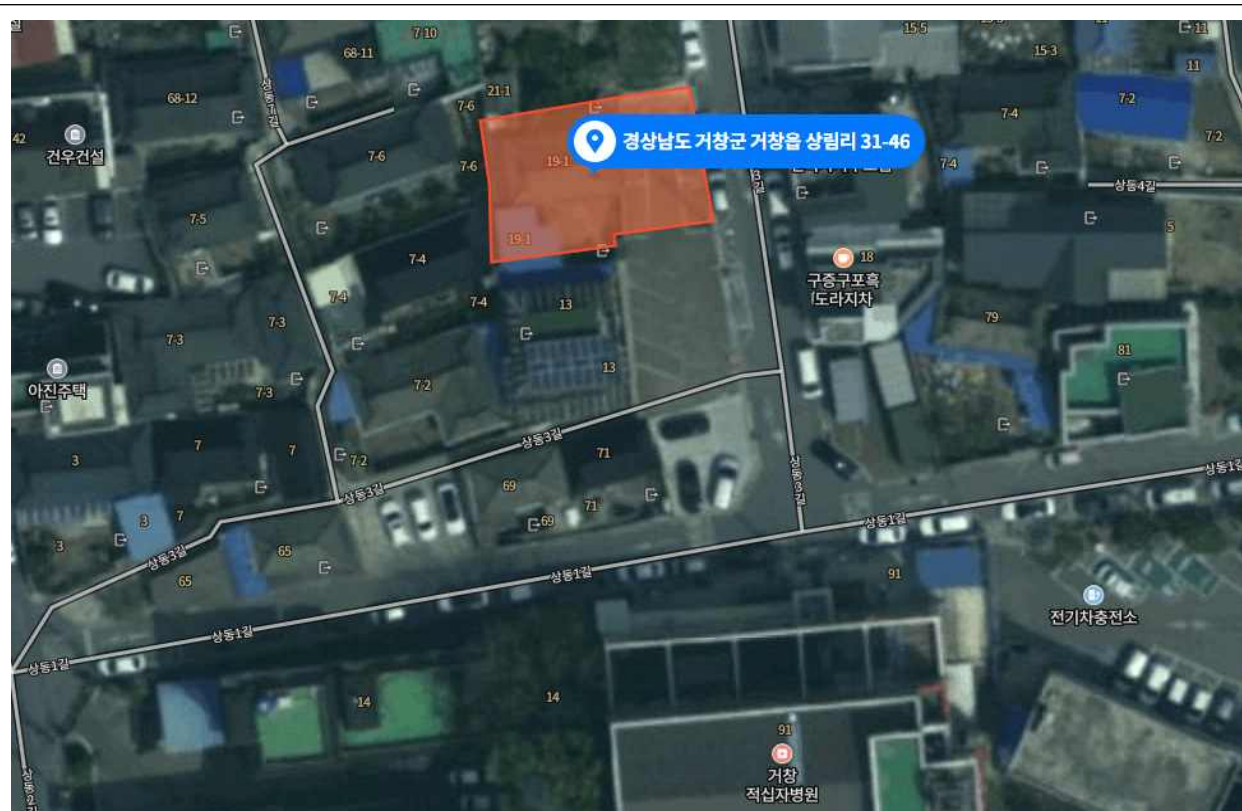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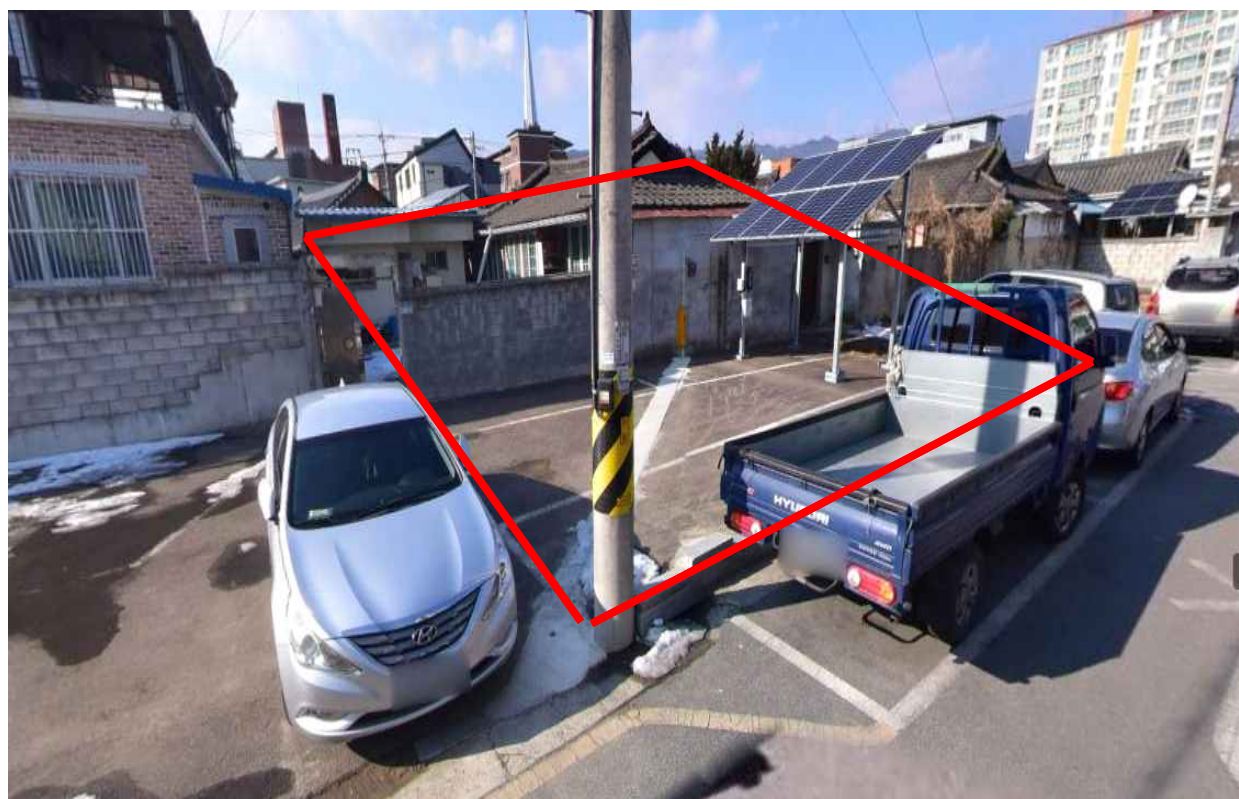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림리 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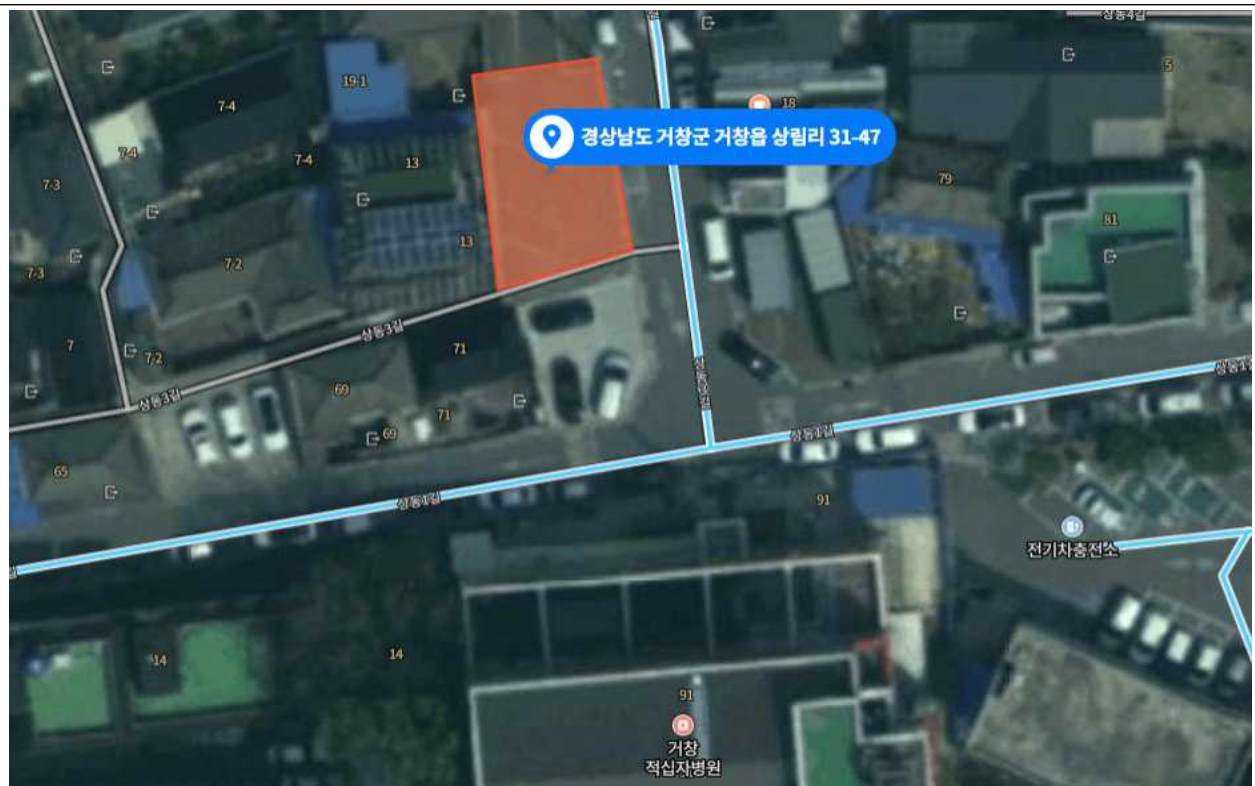


위치도(상림리 31-46)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림리 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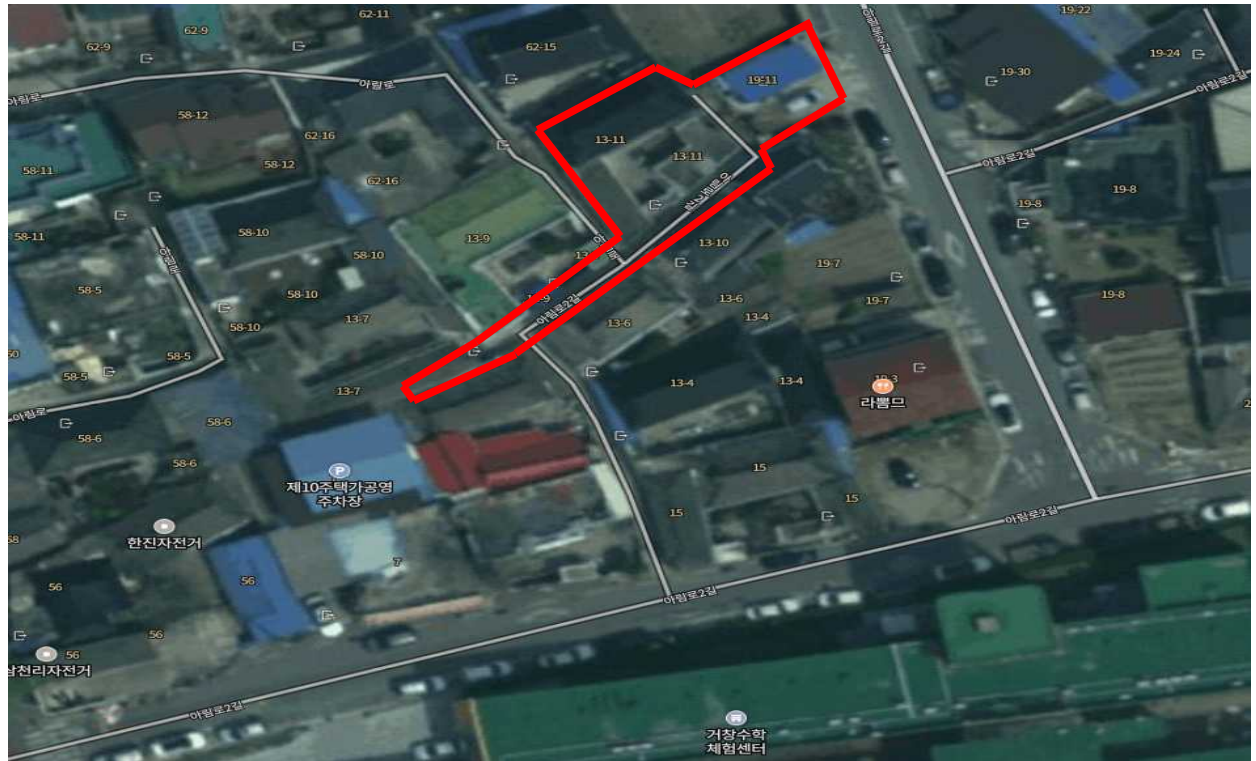


위치도(상림리 31-47)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앙리 327-9, 329-1, 329-11)



위치도(중앙리 327-9, 329-1, 329-1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앙리 328-10)



위치도(중앙리 328-10)



현장사진

②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

1. 제안이유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화장실 설치, 지중화 변압기 이설) 및 주민 쉼터 공간을 설치하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 설치사업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 사업비 : 1,000,000천원
 - 토지매입 708,000천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지 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예상가격	비 고
		공부상	매입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대	118	118	1.960	708,00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액 708,000원

다. 향후계획

- 2023. 5.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2023. 6. : 부지 매입
- 2023. 9.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기대효과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화장실 및 주민쉼터 설치로 경관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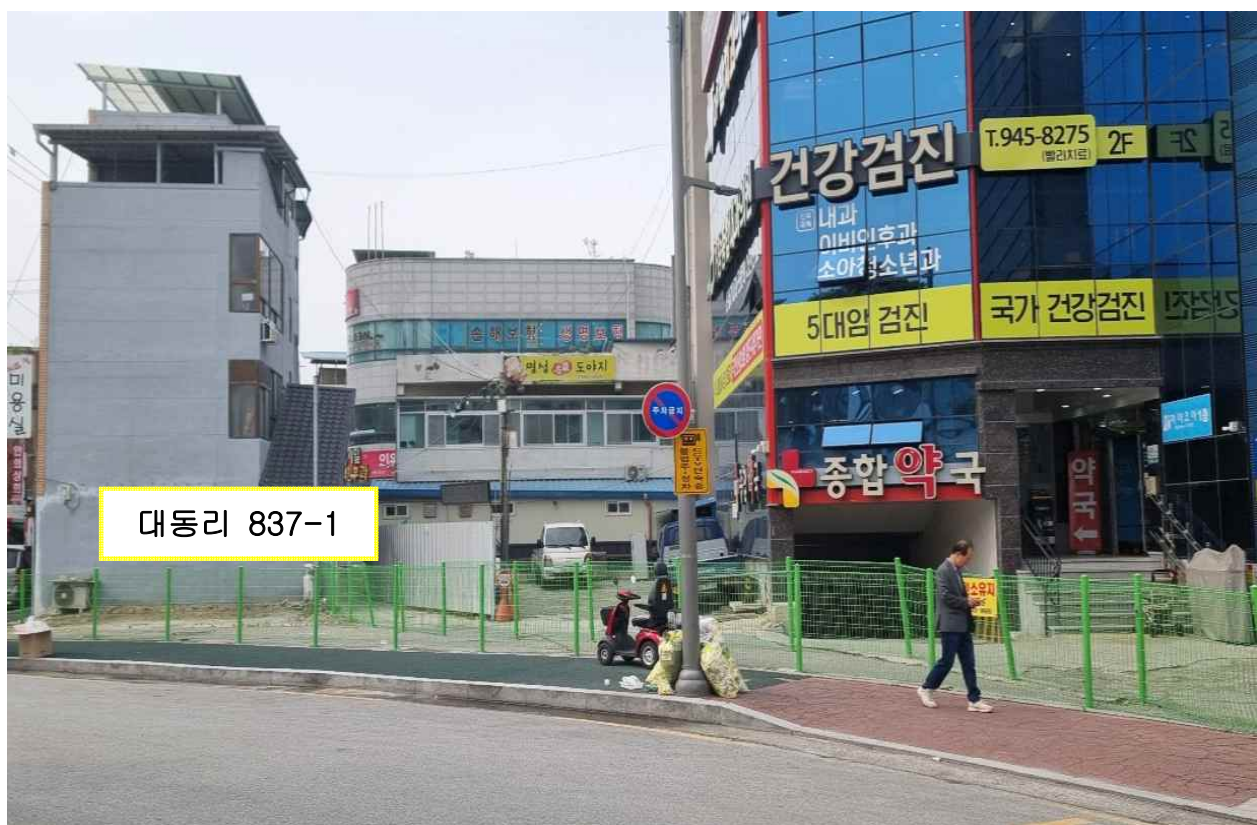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거창읍 대동리 837-1)



현 장 사 진

③ 신원면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언덕 방문객 및 클럽D 골프장 방문객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신원면 덕산리 237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824m²
- 사업기간 : 2023. 5. ~ 12.
- 사 업 비 : 576,331천원
 - 부지취득 : 126,331천원(토지 가감정 평가액 기준)
- 내 용 :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시설물 신축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사유	비고
계	2필지		1,824			
취득	신원면 덕산리 237	답	489	8,740	농산물 직판장 조성	
취득	신원면 덕산리 248	답	1,335	8,740		

다. 추진경과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 2022. 6.
- 농산물직판장 조성 관련 사전검토 : 2022. 12.
- 취득재산 감정평가 : 2023. 1.

라. 향후계획

- 토지보상협의 : 2023. 5.
- 추경예산 편성(토지매입, 건축)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9.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2. ~ 6.

마. 기대효과

- 감악산 및 클럽D 골프장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신규 판로 개척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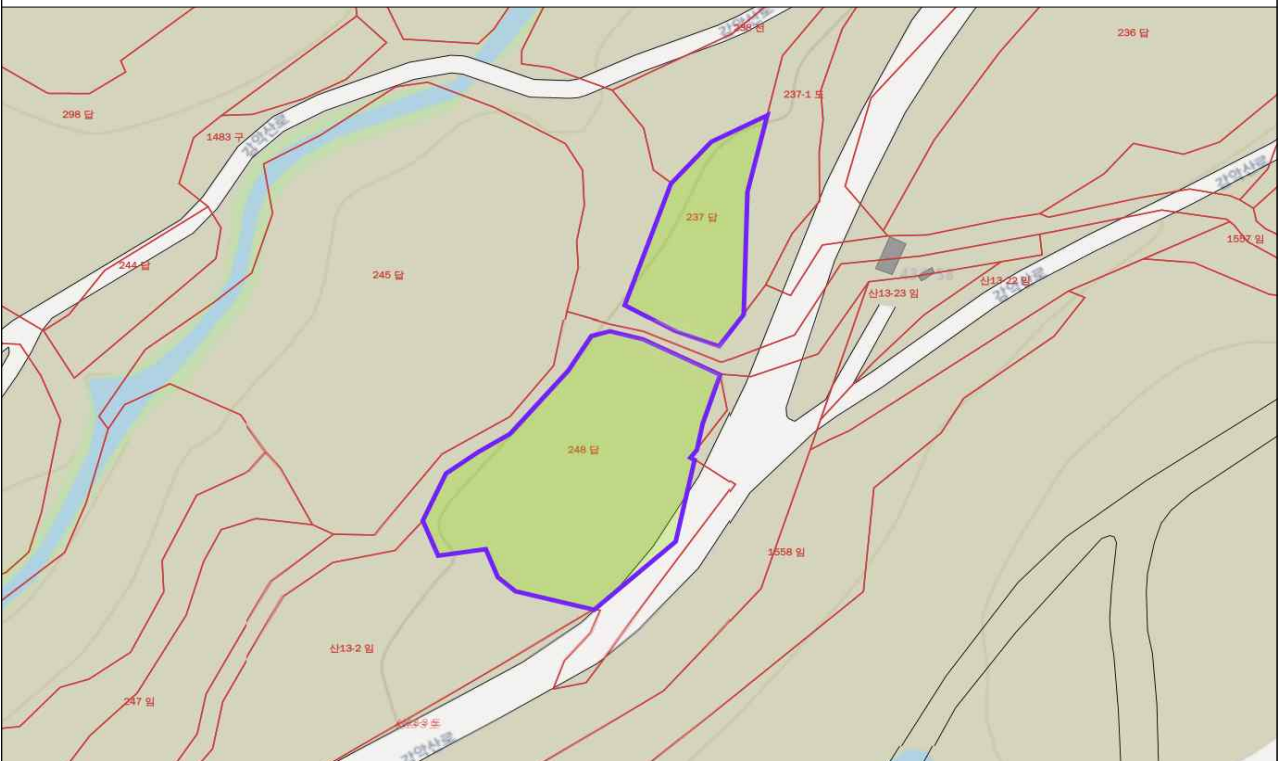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신원면 덕산리 237 등 1필지)



지 적 도



현 장 전 경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5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방안 필요
- 승강기기업체 유치를 통한 승강기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23.4.18. 주례회의 보고((주)대명엘리베이터 지원))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단, 기존 분양 필지 및 공장 매입하는 경우 특별지원 제외)
- * 산업시설용지 33필지(192,549.5㎡) 중 미분양 9필지(39,609.2㎡)
- 2023년 4월 이후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에 투자하는 거창군 외 소재하는 승강기기업체

나. 지원계획

- 지원조건 : 총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방안	비 고
시설보조금	시설투자금액의 10%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전보조금	이전시설가액의 10% 지원	〃

※ 기타보조금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적용

- 지원예정시기 : 투자완료 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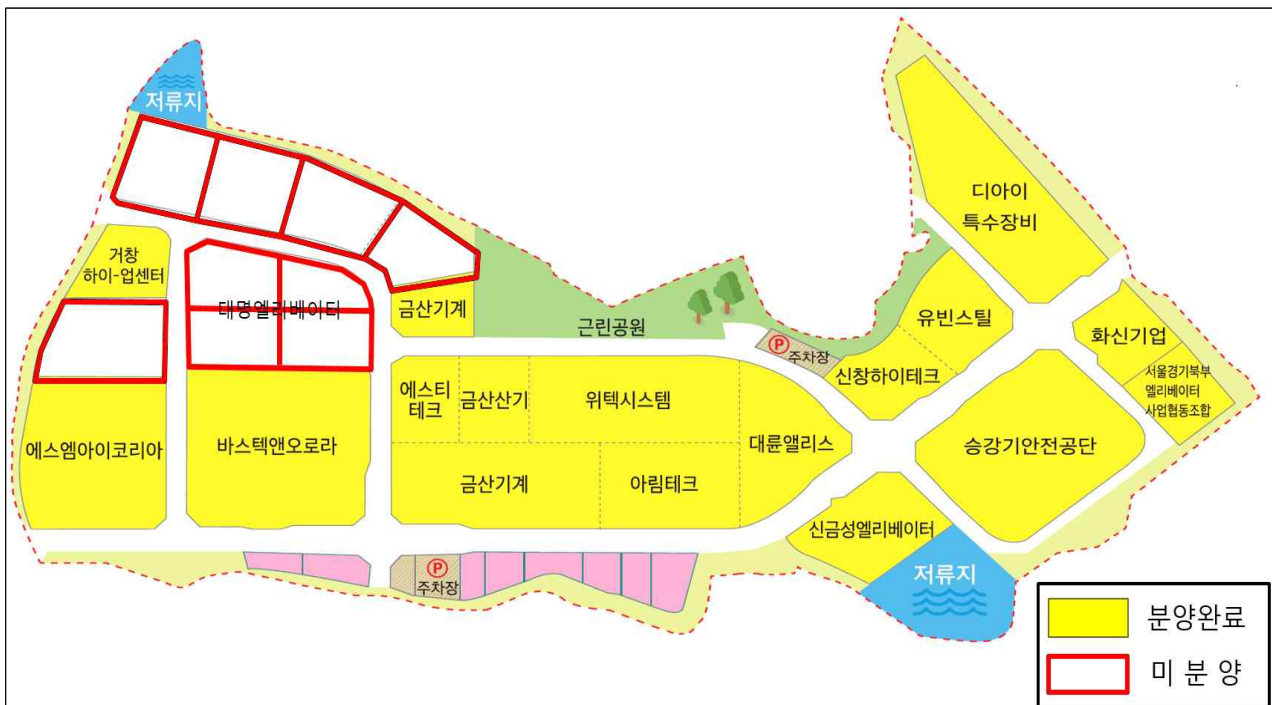
3. 관련법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2항

○ 위치도



○ 현황도



관 련 법 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5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 만료됨
-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나. 위 치 : 거창읍 수남로 2193-40(장팔리 7)

다.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 3년 이내(2023.12.19. ~ 2026.12.18.)

바. 수탁자(단체) :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현재 민간위탁운영현황

- 수탁단체 :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위탁기간 : 2020.12.19. ~ 2023.12.18.(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나. 그간 추진현황

-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3. 5월

다. 향후계획

- 수탁자(단체) 모집공고 : 2023. 8월 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23. 9~10월 중
- 위·수탁계약 체결 : 2023. 11월 중

라.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위탁 계획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 12. 18.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탁 추진계획입니다.

I 전수교육관 운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한다)할 수 있다.

II 기본 현황

- 시 설 명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 위 치 : 거창읍 수남로 2193-40(장팔리 7)
- 인력현황

직 위	인 원	직 무	비고
이사장	1명	대표(상근)	
사무국장	1명	총괄.기획업무	
직원	1명	실무	

- 시설현황

구분	전수회관		체험관 1	체험관 2	체험관 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III 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0. 12. 19. ~ 2023. 12. 18.(3년)
 - ※ 최초 위탁기간 : 2011. 12. 19. ~ 2014. 12. 18.
- 위탁단체 :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이사장 박종섭
-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전수관 운영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계	136,269	124,800	116,548	
인건비(3명)	108,100	103,300	95,840	환경관리일용 (1명)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28,169	21,500	20,708	

IV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일로부터 3년
 - 2023. 12. 19. ~ 2026. 12. 18.
- 위탁대상 업무
 -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무형문화재 홍보
 - 전수교육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수탁단체 : 공개모집
- 위탁조건
 -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 홍보
 - 전수교육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용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며 관리물품 현황은 매년 보고
-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V

향후 추진계획

- 거창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5월 중.
- 수탁단체 모집 공고 : 2023. 8월 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9~10월 중
- 운영관리 위탁 협약 체결 : 2023. 11월 중

관 계 법 령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 4. 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75호, 2023. 4. 26., 일부개정]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88호, 2021. 12. 29., 일부개정]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22. 2. 3.]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699호, 2022. 2. 3., 일부개정]

-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5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 나.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구성(㎡)	
		대지	연면적	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거창읍 거안로 1236-41	15,057㎡	5,508.99㎡	3,009.31㎡	2,499.68㎡

- 나.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 다.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마.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사.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 전년도 운영비 계상분 적용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다. 향후계획

- 2023. 8. 11. ~ 9. 1.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9월초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9월중 : 수탁자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9월말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 운영 조례]

제6조 (운영) 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우리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음
- 나. 치매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동의(승인)사항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 가. 동의(승인)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을 동의(승인) 받고자 함
- 나.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탁시설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 시설규모 : 연면적 2,930㎡(지하1층, 지상2층)
 - 입소정원 100명 / 치매전담실 2실
 - 필요인력 : 61명(요양보호사 45, 기타 운영인력 16명)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시설현황

구분	시설구분	면적(m ²)	주요시설
계		2,930.47	
지하층	설비시설	359.44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계	1,797.58	
	관리시설	340.45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실, 면회실, 시설관리실
	치매전담실	416.72	2실(12인x2실-24인)
	요양시설	1,040.41	10실(4인x9실, 특실x1실-37인),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요양보호사실
지상2층	요양시설	773.45	10실(4인x10실-40인), 공동거실, 목욕실, 식당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에 의한 고품질의 공공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법인 위탁 시 탄력적,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군 재정부담경감이 가능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믿고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및 가족부담 경감에 기여

다. 시설운영(안)

- 운영예산 : 연2,649,900천원 *독립채산제로 운영(100인 입소 시 예산)
-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군 재정지원 불필요)
- 단, 개원이후 운영 정상화 이전(정원 충족) 운영비 지원 필요
- 연간 예상 수입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649,900	합계	2,649,900
입소자부담(20%)	529,980	인 건 비(80%)	2,119,920
요양급여(80%)	2,119,920	운 영 비(20%)	529,980

☞ 산출근거 : 100명 × 72,600원 × 365일 = 2,649,900천원

※ 산출근거 : 건강보험공단 자료<장기요양 2등급 기준>

※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노후 대비 개보수 비용으로 매월 적립

○ 입소정원 : 100명(일반 76명, 치매전담 24명)

○ 배치인력 : 61명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61명	1명	1명	1명	4명	1명	45명	1명	1명	4명	1명	1명

라.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요양시설 보호대상 노인성질환, 중증 치매 노인 등 입소보호
 - 노인성질환,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 가족지원, 의료·사회재활 등 프로그램 운용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이 주 목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향후 추진일정(안)

- 가. 2023. 7월 ~ 8월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나. 2023. 8월 ~ 9월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다. 2023. 9월 :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라. 2023. 9월 :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 마. 2023. 12월 : 시설 준공

- 붙임 1. 관련사진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관련사진

□ 현장사진(23.5.17. 기준)



□ 조감도



□ 평면도(좌1층/우2층)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제목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 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장애인 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기 위탁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도자체사업)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 2021. 1. 1. ~ 2023. 12. 31.

나.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및 군비추가분)

-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사업내용 준용

나. 위탁 참여인원 : 12명(도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다.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사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업무 장애인일자리 업무 수행
-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 단체 등)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12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수탁기관 장애인시설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71
 -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가능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3년 기준) : 82,478천원(도비 8,118, 군비 74,360)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장애인일자리지원(도자체 사업) 위탁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준법의식 고취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 12명(도자체 4, 군비추가 8) / '23년 기준
 - ※ 도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인원 변동 가능
- 위탁내용 :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 사업비 : 82,478천원(도비 8,118, 군비 74,360) / '23년 기준
 -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 단체 등)
- 그 간 위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고
장애인일자리 (도자체사업)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부	2021.1.1. ~ 2023.12.31	



근무조건

- 근로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23년 기준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538,720원(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538,720원, 운영비 월 23,690원

※ 매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내용 준용

⇒ 수탁기관 : 일자리 참여자 근태관리, 급여지급, 불법주차 계도 등

○ 일자리 참여사진



위탁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12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위탁기관(거창군) :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수탁기관 장애인시설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등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4.]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2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2-1.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기관

1)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수행 가능

- 다만 민간 위탁 시에는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 기관(장애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가능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인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 등)

2)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가) 시·도에서는 지역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

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에 위탁 하여 사업 추진(직접 수행 가능)

※ 사업의 위탁은 p.47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하여 위탁

참고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및 종류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통합형 거점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교육지원센터 등을 의미함

- ①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
- ②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초·중등교육법 제56조)
-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
- ④ 통합형 거점학교: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견실링 제공 등 당해 지역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
- ⑤ 전환교육지원센터: 졸업 후 장애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운영되는 전환교육 전문기관

마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p.47-48/위탁기간

I. 사업운영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 취득 및 상실 신고 (가) 사업수행기관은 가입보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을 파악하여 직접 신고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인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일자리개발팀)에서 별도 안내 (나) 참여자에 따라 각종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각 참여자별 고지된 보험료에 따라 기본 임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수지급 (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반드시 모든 참여자의 사회보험(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함 ※ 보험관련 문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65), 건강보험-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신제 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다) 비용 예산 반납 :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액은 반납 3-8. 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table> <tr> <th rowspan="2">사업유형</th><th rowspan="2"></th><th colspan="2">사업수행기관</th></tr> <tr> <th>시·도 또는 시·군·구 직접수행</th><th>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th></tr> <tr> <td rowspan="2">일반형 일자리</td><td>전일제</td><td>○</td><td>*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 민간위탁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td></tr> <tr> <td>시간제</td><td>○</td><td>*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td></tr> <tr> <td rowspan="2">복지 일자리</td><td>참여형</td><td>○</td><td>*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td></tr> <tr> <td>특수교육-복지연계형</td><td>×</td><td>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 다만 지역여건상 위약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td></tr> <tr> <td rowspan="2">특화형 일자리</td><td>시각장애인인마사 파견</td><td>×</td><td>(사)대한인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 가능</td></tr> <tr> <td>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td><td>×</td><td>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에 우선 위탁 고려</td></tr> </table>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직접수행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 민간위탁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시간제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 다만 지역여건상 위약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인마사 파견	×	(사)대한인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 가능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에 우선 위탁 고려	※ 제사된 기관이 아닌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사전협의 필요 *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이용·가정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 특수교육관련기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 전공과, 동업 제11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나. 사업수행기관 모집 1)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에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가) 사업위탁신청서[서식2] 1부. 나)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3]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라)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기관에 한함).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1)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 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해야함 ※ 전년도 수행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라도, 민간위탁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는 매년 준수해야 함 ※ 위탁 사업수행기관 위탁협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민간 위탁 조례에서 별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을 경우 협약기간 변경 가능 2) 전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관은 선정 제한됨 3)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 4)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 위탁 협약서 [서식5] 작성 및 협약 체결 라. 위탁 기관 준수 사항 ○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은 「위탁협약서」 및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 일자리 전산시스템), 기타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사업유형				사업수행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직접수행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 민간위탁수행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시간제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단체 등)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 ※ 다만 지역여건상 위약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인마사 파견	×	(사)대한인마사협회에 위탁,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으로 위탁 가능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에 우선 위탁 고려																											
47		48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기 위탁 추진 중인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 2022. 1. 1. ~ 2023. 12. 31.

나.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나. 사 업 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

마. 위탁방법 : 현 수탁기관 재위탁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경표)

바.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 2021. 7. 차량 교체

3. 참고사항

가. 재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관리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응답이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위탁금은 대부분이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거창군삶의쉼터)의 후원금으로 운영 재료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수탁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무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 수탁기관처럼 기관의 자체 후원금과 인력을 충당하며 수행할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재위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향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23. 9월 중
- 재위탁 적격여부 심의 : 2023. 10월 중
- 재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6,000천원 /2023년 기준
 - 최저인건비 상승 등 요인 발생시 위탁금 인상 가능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위탁 계획

-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목욕에 대한 욕구해소
- 대상자의 위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을 확보함



위탁개요

-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명 : 거창군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 위탁내역 : 차량 1대

차종	규격	차량번호	연식	비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2021.7. 차량교체

- 추진방법 : 재협약
- 사업대상 : 거창군 거주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 사업내용
 -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실시
 - 대상자 1인에게 월 2회 정기적 방문 목욕 서비스 실시
 - 체온, 혈압 확인 등 기본 건강상태 확인 등
- 사업비 : 36,000천원(군비 36,000) / '23년 기준



그간 추진 사항

- 수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장애인복지관)
- 그간 위탁 내용
 - 2012. 3. 1.~ 2014. 2. 28 : 공모
 - 2014. 3. 1. ~ 2016. 2. 28 : 재위탁
 - 2016. 3. 1. ~ 2019. 2. 28 : 재위탁
 - 2019. 3. 1. ~ 2021. 12. 31 : 재위탁
 - 2022. 1. 1. ~ 2023. 12. 31. : 재위탁

- 운영인력 : 13명(전담인력 1명 / 노인일자리사업 12명)
- 이 용 료 : 무료
-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 목욕서비스 미대상자
- 신청방법 : 본인(가족 포함)이 삶의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 연도별 추진사항

(단위 : 명,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연간 이용인원	648	220	645	638	누적인원
예산지원	30,000	30,000	34,000	35,000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운영으로 서비스 이용자수 및 횟수 감소



향후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23. 9월 중
- 재위탁 적격여부 심의 : 2023. 10월 중
- 재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개인위생과 심신의 건강증진
-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유대관계 강화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등

가 활동사진 : 목욕서비스 및 기초건강 Check,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나. 위탁대상 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 연간 5~ 10명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동의(승인)사항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에게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 2023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 2023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23년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023년 12월
- 위탁업무 개시 : 2024년 1월
-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30,000천원

- 붙임 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계약

민간위탁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현 위탁체 현황 (단위 : 천원)

수탁기관	대 표	주 소	업 종	비고
거창한거창조합 공동사업법인	김종경	거창읍 거함대로 3372	농산물 유통	

※ 최초 운영 : 2011. 3. 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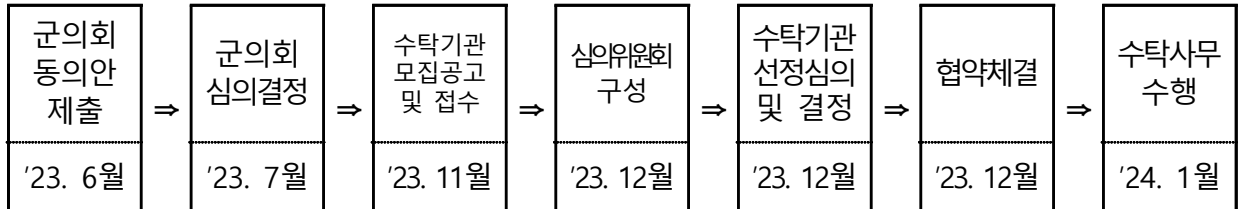
○ 위탁기간 : 2022. 2. 1.(화) ~ 2023. 12. 31.(토) / 1년 10개월

○ 운영방법 :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을 채용, 근로임금 50%이내를
위탁금으로 보조,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과선별 작업	9명	9명	6명	6명	6명	

-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 위탁 추진절차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제출 : 2022. 6월중(제271회 정례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4.(금) / 12일간
- 접수기간 : 2023. 11. 14.(화) ~ 2023. 11. 24.(금) / 11일간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 신청자격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관내 소재 업체 또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 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인원 : 6명이상 8명 이하 / 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2월 중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결정·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 2023. 12. 2.(목)
 - 위탁기간 : 2024. 1. 1.(월) ~ 2026. 12. 31.(목) / 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IV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6월중(제271회 정례회)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11. 13.(월) ~ 2023. 11. 24.(수)
-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3. 11. 27.(월)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2. 7.(목)한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 12. 21.(목)한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2023. 12. 27.(수)한

[붙임 2]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붙임 3]

관 계 법 령(요약)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
-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구간 노상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명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시설명	노상주차장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구간 및 위치 (주차면수)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노상주차장(39면)	거창읍 대동리 780-3 (50면/1,946㎡)
위탁기간	2023. 11. 23. ~ 2026. 11. 22.(3년간)	
선정방법	공개입찰	
위탁사무	주차 안내 및 지도, 주차요금 징수,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계획	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연중무휴 · 09:00 ~ 18:00(주간)
그간 운영현황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기간 : 20. 11. 23. ~ 23. 11. 22.	주식회사 푸른솔 기간 : 22. 11. 23. ~ 23. 11. 22.
※ 주차장 운영 관리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병합 위탁 추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 절감, 공영주차장 관리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향후일정

- 원가계산 용역 : 2023. 8. ~ 9.
-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 2023. 10.
- 계약체결 : 2023. 11.
- 위탁운영 : 2023. 11. 23 ~ 2026. 11. 22. / 3년간

라. 예정가격 : 21,338,000원

- 위탁료는 예정가격을 매년 산정하여 낙찰가율에 따라 부과
※ 원가산정용역 시행 후 위탁료 확정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계획

◆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계획입니다.

□ 위탁운영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주차장법」 제8조 및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3. 11. 23. ~ '26. 11. 22. / 3년간
- 선정방법 : 공개입찰
- 위탁대상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비 고 (계약금액)
노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39면	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3,458천원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 일원	50면	연중무휴 · 09:00 ~ 18:00	17,880천원

- 위 탁 료 :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산정

□ 운영사항

①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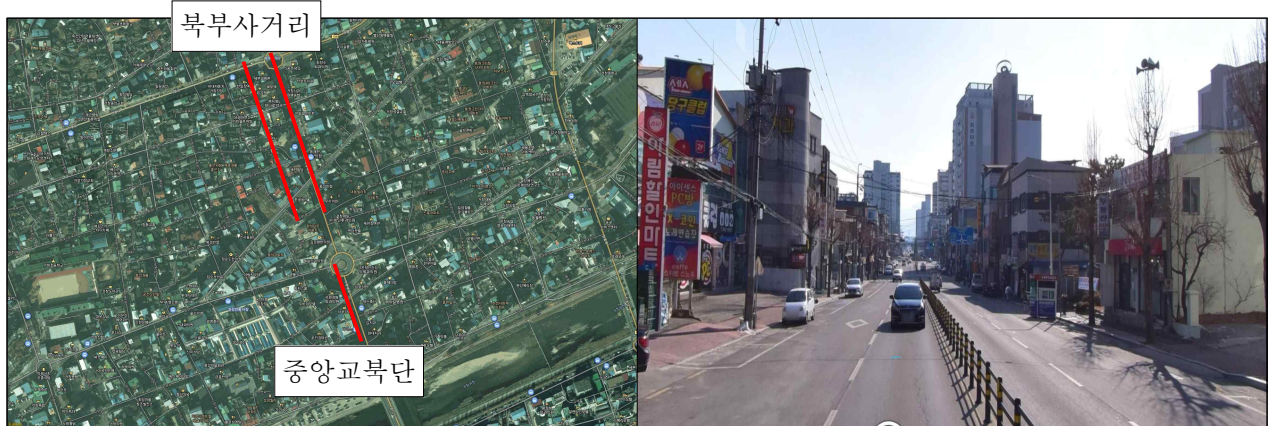
- 위탁기간 : '20. 11. 23. ~ '23. 11. 22. (3년간)
- 수탁기관 :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 운영시간(연중무휴)
 - 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3월 : 09:00 ~ 19:30
- 위탁구간 : 북부사거리 ~ 중앙교 북단 39면

○ 연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4월
매출액	31,912	46,609	46,027	14,398

○ 위치도



2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 위탁기간 : '22. 10. 23. ~ '23. 11. 22. (13개월)

○ 수탁기관 : 주식회사 푸른솔

○ 운영시간 : 09:00 ~ 18:00 / 연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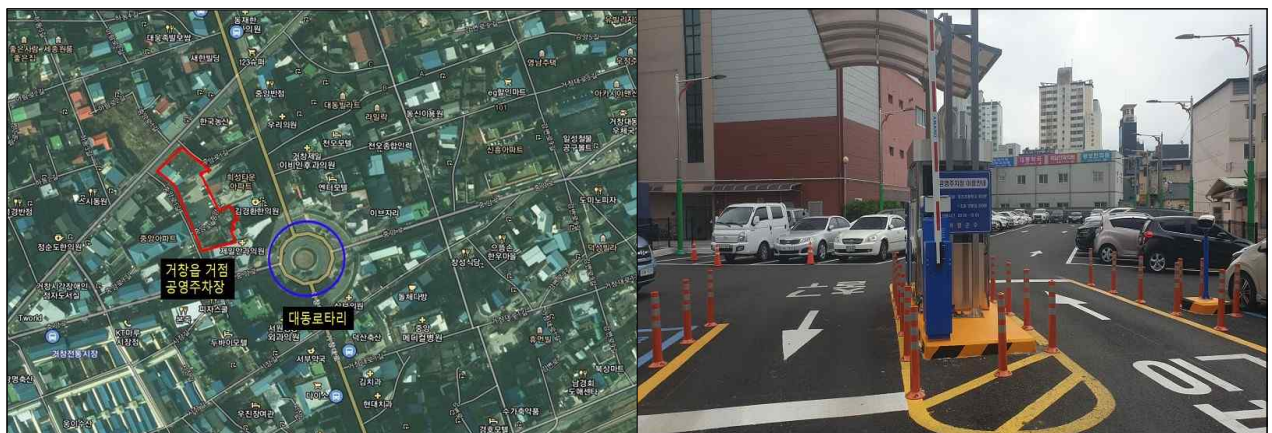
○ 위탁위치 : 거창읍 대동리 780-3 인근

○ 연 매출액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 4월	비고
매출액	2,341	10,509	22.11.~운영

○ 위치도



☐ 향후계획

- 원가산정 : 2023. 8. ~ 9..
- 입찰공고 및 민간위탁 선정심의 : 2023. 10.
- 계약체결 : 2023. 10. ~ 11.
- 위탁운영 : 2023. 11. 23. ~ 2026. 11. 22. / 3년간

☐ 기대효과

- 장기주차방지, 중심상가 방문객 증가, 지역상원 활성화 유도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의 선순환 형성
- 도심주차환경 불편해소와 인근상가 이용 고객 증가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2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 (2016.12.28)

-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개정 1998. 2.11 조례 제1467호 2016.12.28)

3. 그 밖에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삭제(2016.12.28.)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2023-6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절감을 통하여 웅양면 하성단노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 업 자 :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양주은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12월(6개월간)
- 발전용량 : 20kw
- 사 업 비 : 35,000천원(군 35,000, 자부담 0)
- 사업유형 : 자가소비형[생산전기 모두 자가소비(판매불가)]

나. 추진사항

- 2023. 04. 27. :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건의
- 2023. 05. 02. : 경제기업과 설치 지원방안 검토요청
- 2023. 05. 06. : 경제기업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주민수익형 분야)으로 설치 가능’으로 검토결과 회신
- 2023. 05. 17. :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공유재산 사용승인 요청

다. 재산의 표시

위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웅양면 한기리 915-2 (건물 옥상)	토지 : 776 건물 : 219	90	20	하성단노을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양 주 은	

라. 향후 추진 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군의회 동의 이후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허가조건 : 사용료 부과 및 자진철거
 - 연간 사용료 : 산출근거에 따름
- ⇒ 산출내역 : 재산평가액(공시지가×부지면적×요율5%)×옥상지수×50/100감면×1.1(부가세)
- 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일 ~ 2023. 12.

3. 관련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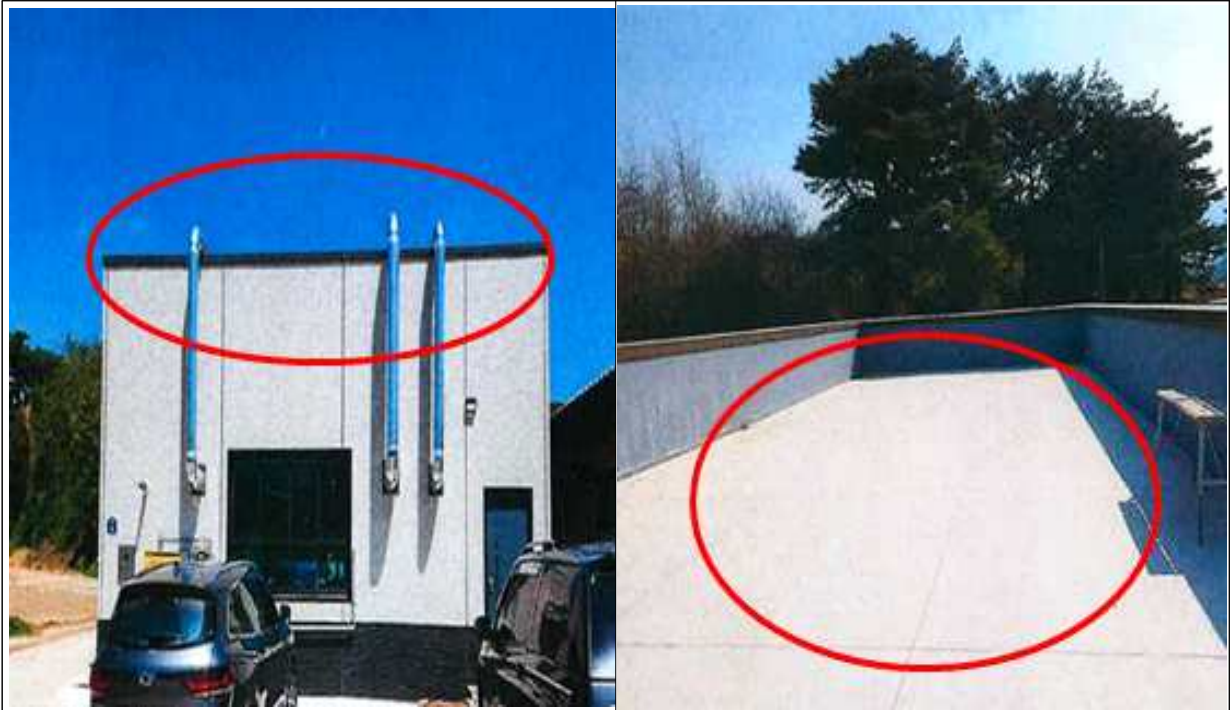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4항

4. 위치도



위치도 :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915-2

5. 현장사진



현장사진 (공동급식소 건물 옥상)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